의안번호	제591호	
의 결	2013년 월 일	
연 월 일	(제325회)	

#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12월 2일

##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1

발의연월일 : 2013년 12월 2일

발 의 자 : 김영주, 이광진, 김종필,

강현삼, 김재종, 박문희,

임헌경 의원

#### 1. 제정이유

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목적으로 충청북도내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, 제3조)
- 나. 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(안 제4조)
- 다.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임무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원인조사 시기, 현지조사,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- 마. 타 시·도 지원 및 지원요청, 경비지원(안 제10조, 제11조)

### 3. 조례안 : 붙임

- 4. 신・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- 5. 관계법령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7. 관련부서 협의 :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
- 8. 입법예고결과 : 13. 11. 11. ~ 13. 12. 1.까지

###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진재해대책법」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 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진예방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 발생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지진피해 원인조사"(이하 "원인조사"라 한다)란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 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지진피해 원인조사단"(이하 "원인조사단"이라 한다)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충청북도 지역본부장"이라 한다)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.
  - 3. "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"(이하 "조사단원"이라 한다)이란 지질·건축·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써 충청북도 거주자 중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단원으로 임명하여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관할구역 내에 적용한다.
- 제4조(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)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

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.

- 1. 규모 5.0 이상의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
- 2. 규모 5.0 이하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·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
- 3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
- 4. 그 밖에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5조(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· 협회 등의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·관리하여야 하며, 별표 1에 따른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.
- ② 원인조사단의 단장(이하 "조사단장"이라 한다)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하고,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-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.
  - 1. 별표 1의 관련분야 학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
  - 2. 그 밖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
- 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한다.
- 제6조(원인조사단의 임무)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다.

- 1.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- 2.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
- 4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
- 제7조(원인조사 시기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.
-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8조(현지조사)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, 지역, 인원,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.
- 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인조사장비 인력 등의 증감 사항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제9조(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1의 양식에 따라 지진피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최종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2의 양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·완료하고,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

전부와 함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·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원인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「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」를 작성· 발간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타 시·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진피해가 없는 인근 시·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를 입은 인근 시·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1조(경비지원)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(수치지도화)비, 비디오 촬영비, 위성사진 분석비, 조사차량 임차비,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편성기준

분 과	규 정	관련 학·협회	비고
지진현상규명	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	- 대한지질학회 - 한국지진공학회 등	
건 축	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	- 대한건축학회 등	
교 통 시 설	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	- 대한교통학회 등	※ 지진피해가 발생 하여 지진피해 원인조사단
상·하수도 및 환경시설	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	- 한국상하수도협회 등	가동이 필요할 경우, 각 학·협회 별로 편성 기준상 인력이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
산업·통신시설	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각 2인 이상	<ul><li>한국방재협회</li><li>한국방재학회</li><li>한국통신학회 등</li></ul>	인력풀 구성·관리 (예, 원자력시설 등이 없는 지역인 경우 이 분야 전문가는 인력풀 구성에서
수 리 시 설	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	- 한국수자원학회 등	제외)
원 자 력 시 설	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 - 관기술자 2인 이상	- 한국원자력학회 등	
지반·토목시설	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	- 대한토목학회 - 한국지반공학회 등	

##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

## │. 조사 개요

- 가. 목적
- 나. 조사기간
- 다. 조사지역
- 라. 조사단

## Ⅱ.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

- 가. 조사내용(피해발생 현황 등)
- 나. 원인분석

## Ⅲ. 현장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

## Ⅳ. 최종결과보고 방향

##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

## │. 조사 개요

- 가. 목적
- 나. 조사기간
- 다. 조사지역
- 라. 조사단
- 마. 주요 조사내용

## Ⅱ. 충청북도의 지진현황 및 특성

- 가. 충청북도의 지진현황
- 나. 금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

#### Ⅲ. 현장조사 결과

- 가. 지진피해 총괄
- 나. 현장조사 내용
  - 1) 시설별 피해 내용
  - 2) 지역별 피해 내용
  - 3) 지진 발생 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
- 다. 시설별 피해워인 분석

### Ⅳ. 지진피해 교훈 및 시사점

## ∨. 국가지진방재정책 개선방향

## Ⅵ. 결언

부록: 화보

#### 관계 법령

#### [지진재해대책법]

- 제20조(지진재해 원인조사·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·운영 등)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원인의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.
- ② 중앙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중앙본부장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재해가 발생하면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 지진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
-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피해조사단 및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